천안아산역 EG the1 오피스텔 분양광고

공급 신청 시 유의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모델하우스 관람, 청약 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모델하우스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정부 지침에 따른 출입자 명단 기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는(청약콜센터 1644-7445)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12.22)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군별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군별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군 : 84A1, 84A2, 84C / 2군 : 84B, 84D 군별 각각 1건씩 최대 2건 청약 가능)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매를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1.12.27(월)	2021.12.30(목) 16:00시 이후	2022.01.03(월)~2022.01.05(수) (10:00~16:00)
방법	인터넷 청약(09: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천안아산역 EG the1 견본주택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5)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잔여호실/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규모 · 공급대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 아산시 건축과(2021-허가담당관-분양신고-15) (2021.12.21)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충청남도 아산시 건축과(2021-허가담당관-신축허가-357)(2021.10.21)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38 ■ **대지면적** : 16,304.00㎡ ■ **건축연면적** : 170,217.7359㎡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2층~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등), 지상 1층~지상 3층(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주차장등), 지상 4층~지상 29층(업무시설)

■ **공급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오피스텔 780실 ■ **주차대수** : 오피스텔 자주식 954대, 근린생활시설 자주식 53대(지상 268대, 지하 739대/총1,007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택지개발지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 내진설계 등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0.18	S4	1.2	D	내진 I 등급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 : 확보 ※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최대지반가속도(g)=2/3XSX IE X Fa값(MMA등급 Ⅶ)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준공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별도 통지합니다.(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

군	타입	호실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주차장	기타공용	계약면적	대지면적
				벽체공용	코어공유					
1군	84A1	156	84.8871	8.0769	57.1408	150.1048	47.9972	10.7604	208.8624	20.1055
	84A2	156	84.9441	8.3145	57.1792	150.4378	48.0294	10.7676	209.2348	20.1190
	84C	156	84.5605	10.2426	56.9210	151.7241	47.8125	10.7190	210.2556	20.0281
2군	84B	156	84.1590	10.1571	56.6507	150.9668	47.5855	10.6681	209.2204	19.9330
	84D	156	84.1422	8.6258	56.6394	149.4074	47.5760	10.6660	207.6494	19.9290

■ 공통 사항

- 분양금액은 타입별 면적, 층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 신청 시 분양 모델하우스 및 분양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는 ㎡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실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대상 780실 5개 TYP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시 자세한 사항은 분양 모델하우스 및 분양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은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 신청 시 분양 모델하우스 및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통신실, 감시제어반실 등) 등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분양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은행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되,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3호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분양광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실별 시설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당 현장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법령 등 상의 불허용도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부가가치세포함)

군	타입	공급호실수	층별구분	호실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2-05-23	2022-10-21	2023-03-23	2023-09-22	2024-03-22	2024-09-20	
1군	84A1	156	4층	6	108,843,000	352,870,000	35,287,0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5층	6	109,938,000	356,420,000	35,642,0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6층	6	112,347,000	364,230,000	36,423,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7층	6	113,442,000	367,780,000	36,778,000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기준층	132	115,632,000	374,880,000	37,488,000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84A2	156	4층	6	108,843,000	352,870,000	35,287,0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5층	6	109,938,000	356,420,000	35,642,0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6층	6	112,347,000	364,230,000	36,423,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7층	6	113,442,000	367,780,000	36,778,000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기준층	132	115,632,000	374,880,000	37,488,000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84C	156	4층	6	108,843,000	352,870,000	35,287,0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5층	6	109,938,000	356,420,000	35,642,0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6층	6	112,347,000	364,230,000	36,423,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7층	6	113,442,000	367,780,000	36,778,000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기준층	132	115,632,000	374,880,000	37,488,000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2군	84B	156	4층	6	108,843,000	352,870,000	35,287,0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5층	6	109,938,000	356,420,000	35,642,0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6층	6	112,347,000	364,230,000	36,423,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7층	6	113,442,000	367,780,000	36,778,000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기준층	132	115,632,000	374,880,000	37,488,000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84D	156	4층	6	108,843,000	352,870,000	35,287,0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5층	6	109,938,000	356,420,000	35,642,0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6층	6	112,347,000	364,230,000	36,423,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7층	6	113,442,000	367,780,000	36,778,000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기준층	132	115,632,000	374,880,000	37,488,000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3.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1.12.2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 단, 제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군별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군별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군 : 84A1, 84A2, 84C / 2군 : 84B, 84D 군별 각각 1건씩 최대 2건 청약 가능)
- 1인당 군별 1개씩 총 2건 청약 가능하며, 향후 추첨 및 당첨자 선정시 공고문 상에 표기된 각 군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 중 무작위로 당첨자가 선정되오니 청약신청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시	2021.12.27(월)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2021.12.30(목) 16:00시 이후	2022.01.03(월)~01.05(수)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유형별 무작위 결정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천안아산역 EG the1 모델하우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5)	

- 스마트폰앱 : 금융인증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오피스텔 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전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공동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로그인 → 오피스텔명 및 군/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주소, 연락처등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잔여세대/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별 공통	1,000,000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오피스텔 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수협은행 전지점)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인감 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모델하우스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12.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동 ·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12월 30일(목) 16:00시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구분	내용
층 ·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내에서 층 ·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 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분양사업자가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호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구분	내용
환불 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소	계약금 납부
2022.01.03(월)~01.05(수)	10:00~16:00	천안아산역 EG the1 모델하우스	분양대금 납주계좌에 무통장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금액 납부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수협은행	1010-2155-1942	(주)라인건설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 해당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 · 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위 청약신청금 환불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 체결시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계약용)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 신분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통)_해당자에 한함 4. 계약금 납입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법인 계약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및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3.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지참) –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해당자에 한함 4. 계약금 납입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직계 존, 비속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1통 2.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함) 3.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동 · 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시 계약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당첨된 동 ·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분양광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와 계약 시 계약자의 정보와 상이 할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동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이나 소음 ·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및 사생활 등이 제약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 모델하우스 및 분양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류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입주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 분양게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현재 미정(금융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며 추후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납부금액 중 중도금 납입분에 한하여,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중도금은 전체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는 공급금액의 60% 한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양계약 후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출신청 가능 여부 및 금액 등 대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및 대출 실행, 유지는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며, 대출신청시 계약자의 신용불량 또는 타행 대출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납입예정금액은 본인의 책임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신용도 등의 사유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대출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임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된 경우 제3자가 계약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 의무를 지며, 또한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의 협의내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계약자별 은행을 임의지정 할 수 있고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본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제반서류 발급비용, 인지대, 대출보증수수료 등)으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중도금 약정일에 맞추어 직접 입금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게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건분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를 위한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 분양받은 자는 도장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또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 및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공급신청서의 [타입]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 광고상 [타입(㎡)]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호실별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 주체 및 시공사는 타입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오피스텔 호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시 홍보물은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광고 이전 제작 ·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 및 오피스텔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인 동 · 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실의 타입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실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오피스텔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시공 ·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공동출입구 로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 · 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측량 성과 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 본 오피스텔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용검사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 · 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인 · 허가**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오피스텔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흙 파기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아산배방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 · 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 아산배방 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산배방 지구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블록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계획은 아산시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산배방 지구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오피스텔 진 · 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개방형 녹지로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나 도시계획시설로 당부지 외 대지이므로, 입주민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 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등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 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 ·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신설을 위해서 원인행위자 부담의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 해당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요구되며, 해당사업자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준공 및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이가 혼재된 지역으로 관련된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약을 체결 예정이지만, 현재 학교용지확보는 확정하여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업 중단 및 기공급된 호실의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음.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현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관할 경찰서 협의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 ·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와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과 시공사 또는 시행사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호실에 의해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 및 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옥외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되며 출입통제 장치가 없음. •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이용에 따른 간섭,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임.
- 지하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의 TV공청 안테나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지하층 일부에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람.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본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 내 · 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등) 등에 의하여 소음 · 진동 · 조망권 ·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 진동 · 조망권 ·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등의 입주 후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 있음.
- 본 건물 지하층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 제연휀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시 인접한 호실은 소음 · 진동 · 조망권 ·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해야 함.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함.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부대시설 인접호실은 각 시설물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각시설의 옥상공간(1층)에 설치될 수 있음.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본공사시 호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 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 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호실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브랜드 차별화 계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인접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 및 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호실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로티가 없는 주동과 출입구형태가 상이함. 향후, 이대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호실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 및 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당사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리 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오피스텔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지붕층 등에 시설물 설치로 인해 호실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각동 저층 호실은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 및 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 ·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 층으로 계획되어있음.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은 지하 1층 데크 등에 설치되며, 지상1층 단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이 가능함.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 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램프열, 전면 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 · 후 · 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호실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인접한 호실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 및 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호실은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호실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 및 도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호실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창호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 · 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특화계획 및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옥외계단 등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호실은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열교환실/펌프실/지하저수조 등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호실은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분양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 생활 복리 환경 증대를 위해 착공 후 사업승인도서 기준 이외 지하 PIT공간, 지상 필로티 공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 확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건물 옥상에 제한고도 초과하는 장애물(수목, 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에 통신전자 장비에 전파영향을 미치는 장비/시설(고출력장비, 고전압 전파방해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호실 제공하는 현관 앞 공간은 공용면적에 해당되며, 호실별 구분등기가 불가하고 준공 후 입주민간 별도 협의를 통해 사용권을 정리하여야 함.
- 현관 앞 공간에 대한 전기료, 관리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관 앞 공간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대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단지 주변**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 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인접도로 및 단지 배치여건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문주),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판매 시설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등 경관조명 등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설치되는 보도는 향후 공공시설물로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로 기부채납될 예정이고, 시행위탁자는 해당 토지의 사용권리를 포기할 예정임.

● **동별 현황**

- 단지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소는 104동 북측, 102동 서측, 101동 북측 지상 1층에 위치해 있음.

● **단지계획**

- 단지 내 주민운동 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호실의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 시설(휴게시설 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으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지상층 중앙광장 등 옥외공간으로 비상 차량(소방차량-소형 펌프카 등) 및 관리 차량(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통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및 시공과정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 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 시설(주민운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 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경계 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견본주택의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옥외 탈출용 대피 시설은 향후 인허가 및 설계변경 과정에 따라 형태 및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공용시설**

-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법정 규모를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호실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탈취기 및 배기 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호실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호실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북카페, 독서실, 주민회의실, 세탁실, 키즈카페, 피트니스, 골프장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함.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 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됨.
- 단지에 설치 되는 부대 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승강로와 접한 호실에서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한전 인입 장비와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호실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 항공 장애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지붕 층 및 옥탑 층에 경관조명,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TV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음.
- TV 안테나는 지붕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및 인허가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선통신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복도 및 호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 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소방내진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PD, AD 등 샤프트 벽 내부 별도 마감(미장 포함) 없음 • 본 오피스텔의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임.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 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 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호실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재연 팬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재연용 DA,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 · 후 · 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인근 및 지붕에는 냉각탑, 솔풍기, 배풍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근접 호실의 경우 시선 간섭,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수량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소방 및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공용설비(영구 배수,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부대 복리시설, 경관조명,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공용설비(제습장치, 냉난방기, 엘리베이터 등), 영구 배수 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우수처리시설, 조경(식재, 포장, 어린이 놀이터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홈네트워크 설비) 홍보 및 구연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 회선(단독 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 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 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호실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주차장**

- 주차단위구획 개정법안의 당 현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됨.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호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 관련 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오피스텔 주차대수는 954대이며 근린생활 주차대수는 53대로 계획되었음. • 오피스텔 주차장(지상 1층)의 경우 근린생활 이용객이나 오피스텔 입주민의 출입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사용은 배치계획,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지 · 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위 마감은 미시공 됨. • 주차장 바닥 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음.

● **설계**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호실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창호 특성상 일부 호실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오피스텔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업무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냉각탑, 송풍기, 배풍기, 실외기 일부가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층 호실의 조망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음.

● **평면**

- 단위호실 천장고는 기준층 거실 기준 2.4m이며, 욕실, 다용도실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 호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 배관 등에 따라 깊이 및 폭,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공용홀에는 옥외탈출용 대피 시설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설치되며, 옥외탈출용 대피 시설은 전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 비상시에만 이용 가능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거실 창은 배연창으로, 창호 상부 또는 하부에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며 배연창은 자동 개폐 장치를 통해서만 개폐 가능함.
- 호실 타입에 따라 각 창호의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창은 비상시 소방관 진입 창으로 이용되며, 소방관 진입창 표시 스티커가 부착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타입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 오피스텔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음.
- 동일한 타입형이더라도 호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다용도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구 및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호실 타입별로 반입 혹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창호**

- 외부창호의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사이즈, 유리스펙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호실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및 마감재**

- 호실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호실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 타입 호실 배치 및 유상옵션 선택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호실 내 설치되는 타일(욕실, 발코니, 거실 등) 및 석재(엔지니어드스톤 등), 가구 등 마감자재 나누기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니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타입 및 선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호실 내 가구에 적용된 마감재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여건 등으로 인하여 호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두께 및 안목치수 등이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 호실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주방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 미시공
- 호실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호실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바닥 물흐름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호실별 다용도실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바닥 마감레벨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가스관 등은 시공 여건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점검구가 추가 될 수 있음. •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단위호실 내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호실 금속도어(현관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람.

● **기계설비/전기설비**

- 전열교환기는 다용도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별도 천장마감 없음)이며, 전열교환기 가동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다용도실에는 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입상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호실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호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위생도기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 및 욕실배기는 해당층에서 외부로 직접배기함.
- 호실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렌지후드 환기 덕트로 인해 주방 상부장의 깊이 및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렌즈후드 상부장 내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됨에 따라 상부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에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가스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점검구가 추가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 배관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배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전시, 시연용으로 진열했던 생활 가전제품들은 기본으로 고지된 상품을 제외 하고는 미 제공됨.

● **모델하우스**

- 모델하우스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델하우스 단위호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미러 타입일 경우 본 공사시 호실 내 가구, 가전 등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호실,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타일류는 본 공사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안목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가전류의 경우, 본공사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류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 및 관계법규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배수구,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호실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호실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호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한 모델하우스 전용이며, 본 시공과 무관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을 분양받은 자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 요구할 수 없으며, 단, 사업관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붙박이장의 하부에는 마루가 시공되지 않으며, 벽체와 천장에는 벽지가 시공되지 않음. • 씽크볼 하부장 가림판 앞 공간은 분배기 설치로 폭이 조정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적용 된, 호실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설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 될 수 있음.
- 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단차, 옹벽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모델하우스의 냉난방을 위한 설비이며 본 공사에는 팬코일유니트(FCU)가 설치됨.
-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호실 앞 공용부의 벽, 도어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예시로 본 공사시 건축허가 도서를 준하여 시공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기준층 기준으로 시공함 • 일부 호실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미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510,000,000	330,000,000	200,000,000	5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관련 주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사업자
상호	(주)라인건설	(주)라인건설	에스에이치디(주)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538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5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법인등록번호	220111-0002659	220111-0002659	110111-2213984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1-105-0000100 호	₩ 286,566,000,000	분양광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오피스텔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 **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해당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오피스텔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해당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분양광고에 따른 분양계약자 모집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오피스텔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오피스텔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합니다)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접수일

■ **홈페이지 : http://ca-egthe1.co.kr/** ■ **분양문의 : 1533-0655**

※ 홈페이지 및 분양, 광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기 분양 문의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533-0655**